

2022년 『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』 온라인 홍보·전시 지원 공모 안내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2년 『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』 사업의 일환으로 <2022 온라인 홍보·전시 지원>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동 사업을 수행할 회랑을 다음과 같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○ 공 모 명 : 2022년 『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』 사업
<2022 온라인 홍보·전시 지원> 공모

○ 추진목적

- 비대면 활성화 및 온라인 시장 확대를 반영하여, 한국미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미술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
-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플랫폼 이용지원 및 콘텐츠 유통을 통해 국내외 미술현장 및 컬렉터에 지속적으로 한국미술 노출함

○ 공모내용

구 분	내 용
공모명	2022 온라인 홍보·전시 지원
공모내용	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미술 홍보/판매/전시 지원
공모대상	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화랑
사업기간	2022. 04. 01. ~ 2022. 11. 30. (8개월) ※ '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 및 콘텐츠 제작비 지원신청 가능
공모기간	2022. 02. 18.(금) ~ 2022. 03. 14.(월) 오후 4시까지
지원신청 자격	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미술을 판매, 홍보 또는 전시하려는 국내 화랑 ※ 전체 게시물 중 한국작가 비율 60% 이상인 경우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※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랑
지원자격 제외대상	※ 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, 외교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유사사업(온라인 플랫폼 사용 및 콘텐츠 제작) 내 동일항목을 지원받은 경우

	<p>※ 온라인 홍보 전시지원과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, 온라인 홍보 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,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</p> <p>※ 2022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: 8월 중 공모 예정(홈페이지 추후공지)</p> <p>※ 한국에 전시 공간이 없거나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</p> <p>※ 학교(초.중.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에서 운영하는 화랑</p> <p>※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국·공립(시·도·군립) 문화예술기관</p> <p>※ 문화체육관광부의 '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' 제15조<별표 3>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</p>
지원대상 플랫폼	<p>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 (예시) 아트넷, 아트시, 오쿨라, 아트로직 등</p> <p>※ 온라인 및 SNS, 매체 광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</p> <p>※ 갤러리의 상황과 작가의 커리어, 작품의 성격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신청할 것</p>
지원규모	<p>단체별 최대 20백만원, 21건 내외 선정 예정</p> <p>※ 심사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</p>
지원방법	<p>이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신청 및 교부 정산</p> <p>※ 공모 신청시 '예치형' 선택 필수</p>
지원항목	<p>플랫폼 이용비 (플랫폼 복수 선택 가능, 등록비 및 이용비 포함), 콘텐츠 제작비 (사진/영상 촬영비 및 편집비)</p> <p>※ 제작된 콘텐츠(사진, 영상 등)는 홈페이지, 온라인 플랫폼 등 게재 필수</p>
지원항목 주의사항	<p>※ 상기 지원항목 외에는 지원 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플랫폼 이용료에 광고비 포함할 수 없음 - 콘텐츠 제작비는 사진/영상 촬영 및 편집비로 한정함 <p>※ 지원내용에 따른 상한액 준수</p> <p>※ 사업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정산 실적 보고 제출 필수</p> <p>※ 정산시 회계검사 필수, 반드시 예산에 회계검사비용 추가할 것</p> <p>※ 인적용역비의 경우,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증빙해야 함</p> <p>※ 집행지침에 따라 교부신청 및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은 불인정 및 환수조치됨</p> <p>※ 콘텐츠 제작비의 경우, *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증빙 필수(추후 별도 안내)</p>
중복지원 확인	<p>※ 전속작가제, 미술주간 참여 화랑의 경우 동일내용 및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신청 불가</p> <p>※ 12월 게시내용 및 증빙확인 후 중복부분 확인 시 집행내용 불인정 될 수 있음</p>
선정단체 공통 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명 및 로고 포함 - 지원자 대상 설명회 및 결과 공유회 참석 필수 - 사업 종료 후 한 달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* 제출 - 지원금 정산 회계검사 필수** - '미술공유서비스(www.K-ARTSHARING.kr)' 기관회원 가입 필수 - 지원 플랫폼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(이미지 포함) 제출. 제출된 정보는 '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(K-ARTMARKET.kr)'에 게재

- '시각예술실태조사'(미술시장실태조사) 응답 필수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

* 실적/정산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(작품 판매실적 포함)을 준용하여 작성
 ** 보조금(지원금)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

□ 세부내용

○ 지원내용 및 항목

(지원목적) 온라인/비대면 상황에서 한국미술 홍보 및 판매 판로 개척
 (지원내용) 최대 20백만원 이내 신청. 다음 지원항목의 필요에 따라 선택함

- 지원내용 : 해외 온라인 홍보·전시 플랫폼 이용료 및 콘텐츠 제작비 (사진/영상 촬영비 및 편집비) 지원
 - 아트시, 아트넷 등 국제적인 인지도 및 접근성을 가진 플랫폼 이용 지원
 - 온라인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·작가·작품 홍보 콘텐츠 제작비 지원
 - 갤러리의 전시, 작가홍보 사이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전시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·홍보하는 경우 가점 제공(관련 내용 지원신청서 내 작성 및 포트폴리오 내 포함)

지원항목	내용	비고
등록비	사업기간 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록비 지원 가능	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위한 등록비 및 월별 사용비 (산출예시) oo아트에 2022년 4월 1일에 등록하여 12개월 이용을 신청하고 등록비 \$500, 이용비 \$6,000이 발생하는 경우
이용비	사업기간 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비 지원 가능	- 등록비(가입비) : \$500 - 이용비 : 사업기간(4월~11월) 내 사용분 (\$6,000/12월*8월) : \$4,000 - 지원신청 가능 금액 : 총 \$4,500
촬영비	온라인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및 사진 제작 비용 - 영상촬영(일반영상, VR영상), 사진촬영 모두 가능하며	온라인 전시 및 가상(VR)전시를 위한 촬영, 온라인 플랫폼 게시를 위한 작가·작품, 전시 홍보용 영상 제작 및 사진 촬영 (산출예시) ooo 개인전, △△△단체전 총

	편집비 포함 가능 - 사업 기간 내 제작된 콘텐츠에 한정함	2건의 온라인 전시 진행하는 경우 - 작품사진 촬영비(500,000원x2건) - VR 콘텐츠 촬영진행비 (1,000,000원x2건) - 지원신청 가능 금액 : 총 3,000,000원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촬영비 단가는 촬영업체/가의 견적에 따라 책정하되 심사에 의해 금액 조정될 수 있음

※ 모든 콘텐츠는 온라인 게시 및 유통을 전제로 하며, 성과물 제출 필수임

□ 지원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

신청대상(사업기간)	신청접수기간	심의기간
2022. 4. 1. ~ 2022. 11. 30.	2022. 2월 18일(금) – 3월 14일(월)(오후4시)	2022. 3월 4주 예정

※ '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 및 콘텐츠 촬영비 해당

※ 단,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, 12월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

○ 접수방법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-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통해 접수

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-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-9595

※ e-나라도움 사이트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. 공인인증서 필요 (* 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 불가)

※ '예치형' 사업으로 공모 신청

○ 제출서류 : 전자파일(한글, PDF) 형태로 제출

no	필수 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(*지정서식) 1부	- 지정된 신청서 양식 사용(반드시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)
2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	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필수 (※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해도 한국에 전시 공간이 없거나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 불가능)
3	회랑 포토폴리오	-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, PPT 등) 형태로 제출

※ 필수서류 누락 및 미완성 서류 제출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

○ 지원문의: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(02-2098-2924 / online.art@gokams.or.kr)

□ 심의 및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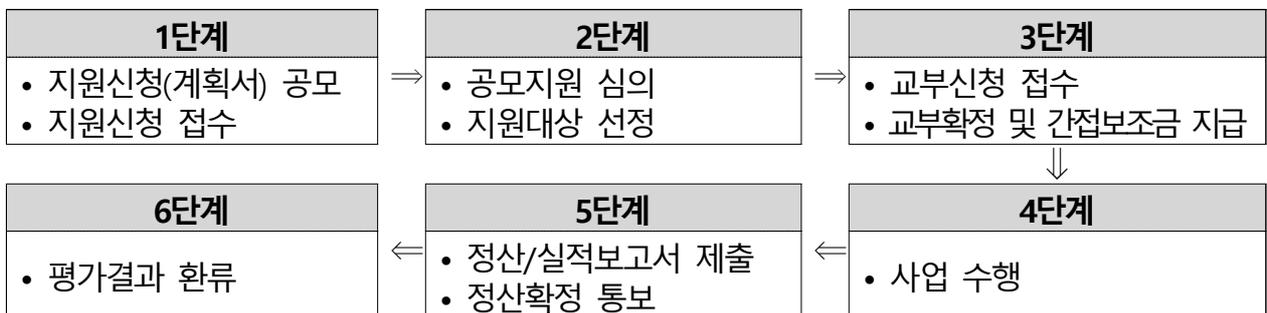
- 심의방법 : 외부 심사위원으로 통한 서류심의
- 심의결과 : 선정단체 개별통보

□ 심의기준

평가항목(평가지표)		가중치	착안사항
계획 단계	사업계획의 구체성/타당성	3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○ 홍보 콘텐츠 및 작가 수의 적절성 ○ 신청단체의 참여작가 중 최근 3년 이내 프로모션 한 한국작가 수
실행 단계	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일정 및 콘텐츠 제작 계획의 구체성 ○ 온라인 플랫폼 선택 및 활용의 적절성 ○ 온라인 콘텐츠 내용 구성의 적합성
성과 단계	사업성과 기대도	3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 플랫폼의 국제적 영향력에 따른 홍보 및 파급력 정도 ○ 콘텐츠 활용계획의 구체성 ○ 제작 콘텐츠의 완성도

- ※ 참여작가의 60% 이상이 한국작가인 경우 지원신청 가능함
- ※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, 해외 플랫폼 이용만 지원함
- ※ 최근 3년 이내 전시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홍보하는 경우 가점 제공
- ※ 콘텐츠 제작 시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며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는 경우 가점 제공

□ 추진절차



□ 유의사항

-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- 과세사업자의 경우 **부가세 지원이 불가**하므로 반드시 **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**해야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(해외 플랫폼 이용의 경우 예외, **국내 업체만 해당**)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콘텐츠 제작사례,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통한 사업 성과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e나라도움 신청 및 접수 관련 유의사항

- 해당 사업은 신청서 접수, 사업자 선정, 예산 교부 및 정산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<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'e나라도움'>을 통해 진행됨
-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로 따른 오류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**가급적 마감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 바람** (마감 이후 사업신청서 제출 불가)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·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함
- 지원내용 관련 문의 외 'e나라도움 시스템'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센터(1670-9595)' 및 시스템 내 [묻고 답하기], [오류신고] 등을 이용하기 바람

국고보조금 지침 개정

- ※ <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> (개정, 2018.3.30.)에 따라 성폭력 관련자(단체) 지원 대상 제외 조항이 신설됨
- 제7조제4항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성폭력범죄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 - 제8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